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가단54986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이상윤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24. 9. 12.

판결 선고2024. 11. 7.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605,301원과 그 중 30,369,961원에 대하여 2023. 12. 8.부터 2024. 1. 5.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3. 4.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23. 4. 17. 접수 제5863호로 마친 A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들은 남매 사이이다.

나.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피고 A(고객번호 : C)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어,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의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였다(이하 위 해당 약정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아 래-

2020-05-12	D	30,000,000원보증비율: 100%	2021-05-12(2024-05-10까지연장되었음)
------------	---	-----------------------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위 보증약정상의 채무자인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피고 A은 2023. 8. 14. 이자 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가 2023. 12. 8. 중소기업은행에 30,369,961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4) 원고가 위 3)항 기재 대위변제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권액은 보증료 등을 포함하여 합계 30,605,301원이다.

다.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

피고 A은 2023. 4. 6.경 피고 B와의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피고 A 소유 각 6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목적물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 명의로 위 각 토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A의 재산 상태 등

피고 A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약 11억 원 이상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사단법인 E에 대한 신용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30,605,301원(대위변제잔액 30,369,961원 + 채권보전비용 235,340원)과 그 중 대위변제잔액 30,369,961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23. 1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4. 1. 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원고의 위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나아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점, ②

피고 A은 위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의 각 채권자들에 대한 금전채무 이행이 지체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 소유 부동산 등에 관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이루어지거나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간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후 실제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대출은행에 보증금을 지급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A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본인이 소유하는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피고 B에게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재산이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 신청을 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는 채무자의 자력으로 고려된바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처분의 대상물을 당해 채무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대출 실행 은행이 채무자의 신용도를 파악하는데 참작했는가 여부는 위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들은 또한, 피고 B가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이전부터 원고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B가 산소 관리, 조상 제사, 부모님 제사를 모신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이 피고 B에게 각 그들이 보유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을 증여하기로 미리 합의하였으나, 그에 관한 등기가 늦어진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자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가 피고 A에 대하여 예전부터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권을 채권자에게 부여한 제도의 취지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한다는데 있음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부정할

논거가 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후자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피고 B의 기여분에 관한 주장이라고 설행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기여분 산정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 A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본인의 상속비율만큼 각 상속등기를 마친 후 피고 B에게 다시 이 사건 증여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더러, 오히려 피고들의 인적 관계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경위 및 시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악의의 수익자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조영기

별지